

부내 협의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 4.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6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를 “별표1의 업종을 말한다.”로 한다.

제9조의16제1항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등록 제한업종(제9조의16제1항 관련)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등록 제한업종(제9조의16제1항 관련)

표준산업분류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46107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331	주류 도매업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6492	귀금속 도매업
46722	귀금속광물 도매업
47221	주류 소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중,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621	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855	일반교습학원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21 중, 91222 중, 91229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중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별표 1의2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등록 제한업종의 예외(제9조의16제2항 관련)

표준산업분류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예외
56213	생맥주 전문점
56219	기타 주점업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 유통하여 상인의 매출기반을 마련하고 상권활성화를 위해 확대 발행 중인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의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포지티브방식의 가맹제한업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떡, 장류 등 식품 및 한복 등 의복 제조 소규모 상인도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권 부정유통에 악용할 우려가 없고 유흥·사행성 등과 무관한 스포츠 및 예술학원, 노래연습장 등의 업종에 대해서 가맹제한을 완화하기 위함